

Germany's New Packaging Act(VerpackG)

독일 신 포장재법

Writer

안재현

한국생산기술연구원 국가청정생산지원센터
국제환경규제기업지원센터 연구원

홍석진

트레스서스테이너빌리티웍스 대표이사

Contents

- I. 개요
- II. 독일의 신 포장재법
 - 1. 등록 의무
 - 2. 포장재 재활용을 목표
 - 3. 완전성 선언
- III. 산업계 대응 방안
- IV. 결론 및 시사점

※ 52쪽부터 56쪽까지 기재되는 '독일 신 포장재법'에 관한 내용은 한국생산기술연구원 국제환경규제기업지원센터의 사전 승인을 받아 전문 전재합니다.

I. 개요

2019년 1월 1일부터 도입된 독일의 '신 포장재법(New Packaging Act(VerpackG))'에 따라 독일 내 최종 소비자에게 공급하는 모든 유형의 포장재 제조사와 유통기업, 온라인 유통기업과 온라인 스텝, 수입기업(이하 '제조업자'로 총칭)에게 새로운 의무규정이 적용되고 있다.

현재의 법률적으로 유효했던 포장재 규정을 대체하게 되며, 새로운 포장재법에서는 등록의무, 데이터 보고, 재활용 목표치 및 일부 정의에 대한 변경이 이뤄지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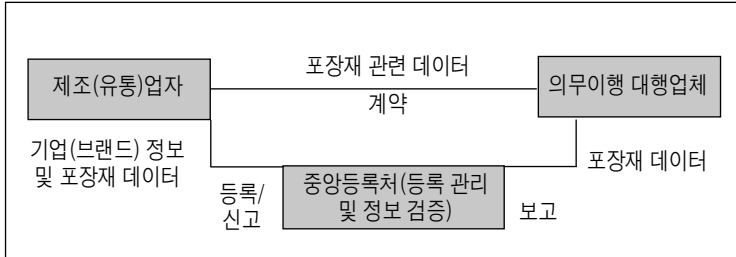
신 포장재법은 중앙등록처에 등록받지 않은 포장재의 시장 출시 금지와 포장재 재활용에 대한 제도적 목표 상향 설정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제도 운영당국의 관리체계 개편(중앙등록처 구축)과 소규모 영세기업에게까지 예외 없이 등록의무를 부여해 포장재에 대한 재활용 책임을 보다 명확히 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또한 물질별로 5~15% 상향된 재활용 목표치를 설정함으로써 보다 적극적인 회수-분류-재활용 체계를 구축하고자 한다.

II. 독일의 신 포장재법

1. 등록 의무

포장재법의 개정을 통해 포장재 제조업자, 정부관리기관, 의무 이행 대행업체 간의 정보관리체계가 변경돼 보다 투명한 정보

[그림 1] 신 포장재법 관련 대상업체(기관) 간의 정보흐름



공개가 예상된다. 제조업자는 물론 제조업자의 재활용 의무를 이행하는 의무이행 대행업체, 법규관리기관인 중앙등록처 간의 제출·등록정보를 규정하고 있다.

① 제조업자

모든 제조업자는 포장재 제품을 독일 시장에 유통시키기 전에 관할 중앙등록처(신 포장재법의 Central Registry 규정에 따라 독일 정부는 포장재 등록 관리 기관인 Zentrale stelle를 설립·운영)에서 등록번호를 부여받아야 한다(신청).

● 제조업자-중앙등록처

포장재 제조업자는 중앙 등록처에 다음과 같은 정보를 제출해야 한다.

- 회사 및 연락처 정보
- 유럽을 포함한 국가식별번호 또는 제조업체의 국가세금등록번호
- 의무이행 대행기관과의 계

약내용, 법률적 의무가 이행되었다는 선언

- 제조업자가 제공한 모든 데이터가 사실이라는 선언
- 보고 의무에 대한 예외가 없어 소량의 포장재만을 유통하는 업체라도 위 사항에 따라 중앙등록처에 데이터를 보고해야 한다. 중앙등록처 등 관련 데이터 보고는 제조업자가 직접 등록해야 한다(제3자인 대행기관이 대신할 수 없음). 다만 제3자에 의해 작성될 수 있으며, Zentrale stelle에서는 향후 등록 및 보고절차에 대한 추가 사양을 설정할 예정이다.

● 제조업자-의무이행 대행기관

제조업자는 의무이행 대행기관에 포장재와 관련된 다음과 같은 정보를 제출해야 한다.

- 등록번호
- 등록된 포장재의 재료 및 수량(부피)
- (중앙등록처) 의무이행 대행기관의 명칭

- (중앙등록처) 의무이행 대행기관의 계약기관

포장 제조업자는 제3자에게 의무이행을 위임할 수 있지만 최종적인 책임은 제조자에게 있다.

② 의무이행 대행업체

독일에서 모든 제조업자는 포장재 회수와 재활용을 위해 독일 전역에서 시행되는 회수, 분류, 재활용 관할 시스템인 ‘제품 회수 시스템 (Dual System)’에 참여해야 하는데, 시스템 내 의무이행 대행업체를 통해 포장재의 수집, 분류, 폐기 의무를 이행할 수 있다.

이 의무이행 대행기관은 중앙등록처에 제조업체의 관련 데이터를 제출하고, 중앙등록처에서는 상호 간(제조업자, 의무이행 대행업체) 데이터 비교를 할 수 있다.

높은 수준의 투명성이 보장되는 구조인 것이다.

현재 포장재규정 (VerpackV) 6조 3항에 의거해 공인된 다수의 공급자가 이러한 서비스를 제공 중이다. 단 해당 업무는 아직까지 ‘Gemeinsame Stelle dualer Systeme Deutschlands GmbH’를 통해 조직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표 1] 독일 내 의무이행 대행기관 현황

BellandVision GmbH http://www.bellandvision.de/	Landbell AG http://www.landbell.com
Der Grüne Punkt http://www.gruener-punkr.de/	NOVENTIZ Dual GmbH http://www.noventiz.de/
ELS Europäische Lizenzierungssysteme GmbH http://www.els-systeme.de/els-deutschland.html	Reclay Systems GmbH http://www.reclay-group.com
INTERSEROH Dienstleistungs GmbH https://www.interseroh.de/	RKD Recycling Kontor Dual GmbH & Co. KG http://www.recycling-kontor.koeln/
Veolia Umweltservice Dual GmbH http://www.veolia.de/dual	Zentek GmbH & Co. KG http://www.zentek.de/startseite/

③ 중앙등록처

새롭게 설립된 Central Registry는 민법에 따라 포장재 관련 관할 당국의 의무를 수행하는 독립기관이다.

2017년 6월 28일 제조업자와 유통업자 또는 관련 협회는 법적인 요구사항에 의해 오스나 브뤼크 내에 중앙포장재등록재단(Stiftung Zentrale Stelle


Verpackungsregister)이 설립됐다. Zentrale Stelle은 법규 집행의 효율성을 위한 독립기관(독일 환경청의 감독을 받음)으로, 행정권을 행사할 권한이 있으며 [표 2]와 같은 임무가 부여된다. 등록된 제조업자는 모든 시장참여자들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Zentrale Stelle의 온라인 사이트에서 공개될 예정이다.

2. 포장재 재활용을 목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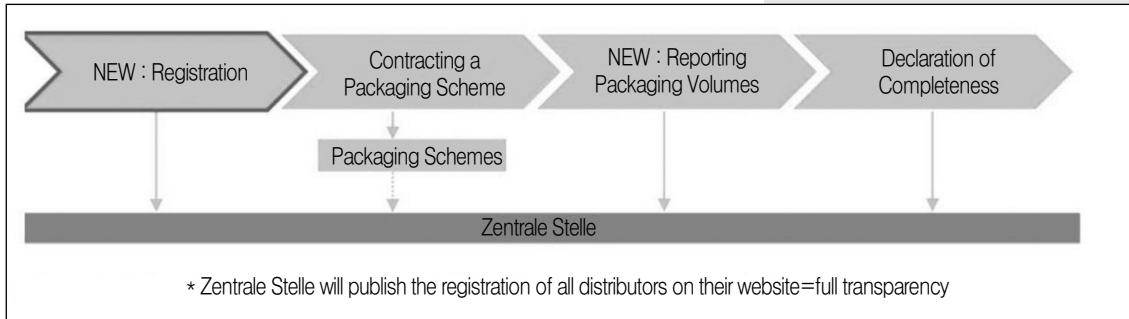
법률적 최소 재활용 목표율은 모든 포장재료(재질)에 대해 상향되고 있으며, 이번 개정을 통해 2022년까지의 재활용 목표를 재설정했다.

의무이행 대행기관은 1년에 한번 ‘물량검증보고서(Mass flow Verification)’를 통해 목표가 달

[표 2] 중앙등록처 ‘Zentrale Stelle’의 주요 임무

주요 업무 영역	온라인 시스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온라인 출판물을 포함한 제조업체 등록 - 제조업체 및 포장 계획에 의해 보고된 데이터 검토 - 제출된 선언서의 완전성 검토 - 포장 계획에 의해 제출된 수량 흐름 증명서 검토 - 포장의 재활용 가능성 측정을 위한 최소 표준 개발(UBA와 협의) - 포장 계획을 위한 시장점유율 계산 - 패키징 분류(최종적으로 어떤 패키징이 패키징 체계와 계약되어야 하는지 정의) - 지점별 솔루션 검토 - 공인 감사원 등록에 전문가 및 기타 감사원 포함 - 감사 지침 개발 	 <p>http://www.verpackungsregister.org</p>

[그림 2] 신 포장재법 내 중앙등록처의 역할



[표 3] 신 포장재법에서 재설정된 재활용 목표율

대상 포장재 유형	현재	2019년	2022년
Glass	75%	80%	90%
Paper, board and cartons	70%	85%	90%
Ferrous metals	70%	80%	90%
Aluminium	60%	80%	90%
Beverage carton packages	60%	75%	80%
Plastics	60%	90%	90%
Mechanical recovery(plastics)	36%	58.5%	63%

성되었음을 증명해야 한다.

이전에는 의무이행 대행업체를 통해 준수여부를 단순 행정적으로 점검해왔으나 앞으로는 등록업체를 대상으로 임의 추출평가 등 관리·감독 제재가 강화될 예정이다.

위반할 경우에는 최대 20만 유로(약 2억 6,600만 원)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3. 완전성 선언

기존 포장재법에 따라 제조업자는 ‘완전성 선언’을 각 소재 지역 상공회의소에 보고해왔으나 신 포장재법 발효 이후에는

중앙등록처에 제공해야 한다.

완전성 선언과 관련해 다음과 같은 법률적 사항들이 조정·변경됐다.

- 완전성 선언 제출일자 변경 (5월 1일→5월 15일)
- 검토업무는 등록된 전문가(감사, 세금 컨설턴트, 공인 회계사)만이 가능
- 불량 또는 미 판매 포장재의 공제부분은 투명하게 공개되고, 이 부분을 차감해 재활용 의무를 부과

완전성 선언 제공의무가 예외적으로 면제되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대부분 소규모 온라인 스텝을 운영하는 개인 사업자

의 경우 면제 대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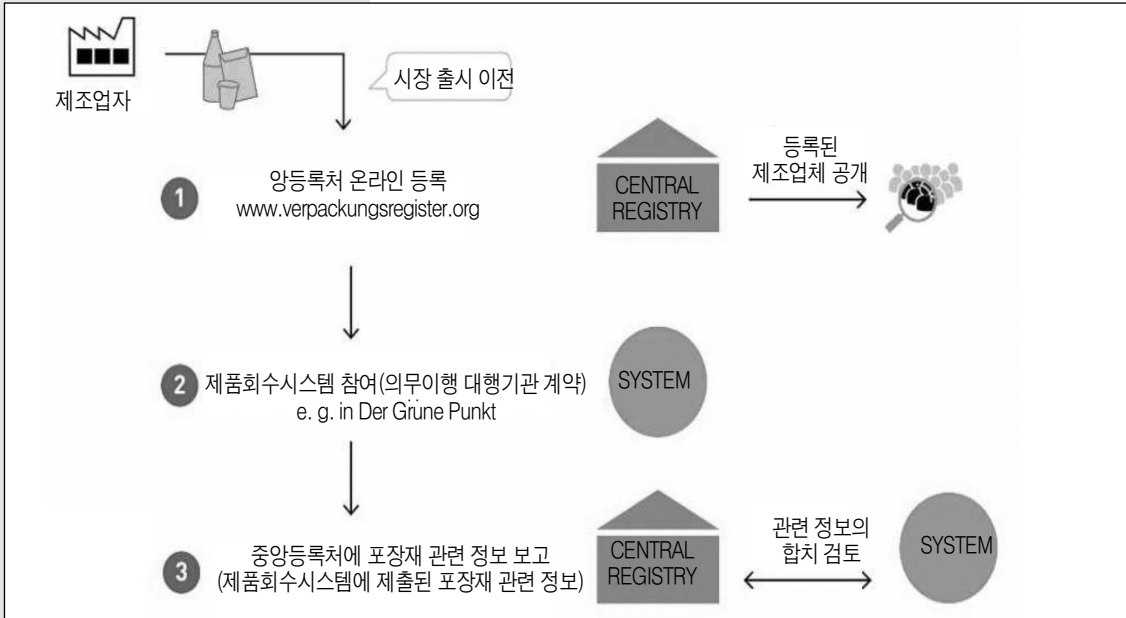
- 8만kg 미만의 유리
- 5만kg 미만의 종이 및 종이 상자
- 3만kg 미만의 철제금속, 알루미늄, 음료수 상자 또는 기타 합성포장재

III. 산업계 대응 방안

독일은 2019년부터 기존 포장재 규정을 개정해 신 포장재법을 도입하고 있다. 이로 인해 포장재 제조사 및 유통기업 외 일반 온라인 유통기업 등에도 새로운 의무 규정이 적용되고 있다. 따라서 온라인 유통기업을 포함한 국내 제조사 및 유통기업은 상기 변동사항을 숙지해 향후 영업 시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사전에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다.

신 포장재법의 개정은 제도를 관리하는 중앙등록처의 신설

[그림 3] 독일 신 포장재 규정 대응 절차도



과 이를 통한 포장재 제조업자의 등록과 관련 정보 등의 투명한 공개에 있다.

이 때문에 포장재 제조업체는 전체적인 등록·정보 보고흐름을 준수하고 이행해야 된다. 소규모 거래를 하는 온라인 유통기업의 경우, 의무이행 대행업체에서 제공하는 간소화된 절차로 일괄적 이행을 하는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또한 포장재질에 있어서 보다 더 친환경적인 소재의 사용을 통해 관련 법규에 대한 대응 비용을 저감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독일 신 포장재법에서는 포장재 제조업자의 친환경 포장재

(재활된 물질의 사용 및 재활용이 용이한 물질 사용 등) 장려를 위해 이러한 포장재질을 사용하는 업자들에게 제품회수시스템(의무이행 대행기관)에 지불하는 요금(modulated fee)을 할인해 주도록 명시하고 있다. 다만 현재까지 명확한 기준이 정의되어 있지 않으며, 중앙등록처인 Zentrale Stelle는 독일 환경청과 표준화 작업을 진행 중이다.

IV. 결론 및 시사점

독일 내에서 사용되는 포장재에 대한 재활용 책임과 관련 정보를 보다 명확하고 투명하

게 하기 위해 신 포장재법으로 개정을 했다. 더불어 상향된 조정된 재활용 목표치를 설정, 관련 산업계의 적극적인 참여와 자원재활용의 정책적 목표 달성을 유도하고 있다.

포장재법은 EPR제도의 모태로, 향후 포장재뿐만 아니라 전기전자 제품 등 다양한 제품군으로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유럽의 환경정책을 이끌고 있는 독일의 정책·법률적 변화로 전 유럽의 포장재 등 EPR제도 개정이 예상된다. 향후 국내 산업의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함께 소규모 영세 수출업자에 대한 관련 정보 전달을 통한 법률적 대응 리스크 저감이 필요하다. [R]